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12

발의연월일: 2022. 7. 22.

발 의 자:윤미향・양정숙・이형석

전재수 · 용혜인 · 민형배

이원욱 · 송옥주 · 이성만

조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등의 시책에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하여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로 인한 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동물에 관한 교육을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등이 교육교재 개발, 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0조의2(학교에서의 동물에 관한 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에 관한 교육(이하 "동물에 관한 교육"이라한다)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1.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2. 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동물에 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u> <신 설></u>	제90조의2(학교에서의 동물에 관
	한 교육) ① 「초・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동
	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에 관한 교육(이하
	"동물에 관한 교육"이라 한다)
	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u>실시하여야 한다.</u>
	1.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u>사항</u>
	2. 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
	<u>한 사항</u>
	3.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
	교에서의 동물에 관한 교육 활
	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